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3.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시청 광장의 주차수요가 많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불편으로 인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어, 부설 주차장의 유료화를 시행하여 고질적인 주차민원을 해결하고 방문객 및 민원인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청과 그 소속 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근거 및 1일 주차권, 월 정기주차권 발매 등의 방법을 정함 (안 제2조 제1항, 제2항)
- 나. 시 소속 관용 차량,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 등 주차요금 징수 면제 대상을 정함 (안 제3조)
- 다. 모범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8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대형차량 등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거부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마. 부설주차장내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 및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손해배상 규정을 정함(안 제6조)
- 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파주시 주차장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안 제7조 제1항)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 (이하“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 ①시장은 청사내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그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별표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주차요금은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의 징수대상) 시장은 당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시 소속 관용 차량
2. 타 기관의 차량중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
4. 출입 언론기관 차량(언론기관 로고부착 취재차량)
5.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 국가유공자등에우뮓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7. 시청 주차장에 입차후 30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 또는 주차시간이 60분미만으로 방문부서 확인인을 받은 차량
8. 특별한 사유로 60분이 초과된 차량의 경우 초과시간 확인란에 확인을 받은 차량
9. 무료주차권을 발부받은 차량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당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모범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2.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기량 800cc미만의 경형 자동차

제5조(주차거부) 시장은 주차장 관리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5. 기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손해배상책임) 부설주차장내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 및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 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 ①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파주시 주차장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총무과 ☎ 940-4102
입 안 자	총무과장	이 한 원
	총무담당	김 진 성
	담 당 자	윤 덕 규

[별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최초 30분	31~60분	60분 이후 매 30분 마다		
무료주차	600원	600원	7,000원	20,000원